

의안번호	제 422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2024년도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23년 10월 4일

2024년도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

의안 번호	422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3. 10. 4.

제출자 : 충청북도교육감

1. 제안이유

-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특별회계 세출예산에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대상기관: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
- 출연목적 및 필요성
 -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은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창의적인 인재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장학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
 -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출연금 재원이 필요함
- 출연예정금액: 180,000천원
- 출연내역: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사업비

○ 기대효과

- 충북 도내 우수학생 조기발굴 및 성장 지원
- 다양하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충북교육 실현

3. 의안전문: 불 입

4. 관계법령 발취: 불 입

5. 기타

1 출연 심의요구서

주 관 부 서	재정복지과	소속부서장	팀 장	담당주무관	전화
	학생복지팀	한명수	강민지	김현미	290-2576

기 관 명	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출 연 대 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반현황 (소재지)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(주요사업)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, 장학금 조성·관리사업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국제교류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저소득층학생 지원 사업 등 ○ 이사장: 최지현 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출 연 사 업 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24년 - 출연 예정금액: 180,000천원 -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(단위:천원)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분</th> <th rowspan="2">2023년 예산액</th> <th rowspan="2">2024년 예산액</th> <th colspan="5">재원별</th> </tr> <tr> <th>계</th> <th>국 고</th> <th>특 교</th> <th>도교육청</th> <th>기 타 *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계</td> <td>180,000</td> <td>180,000</td> <td>180,000</td> <td>0</td> <td>0</td> <td>0</td> <td>180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* 기타: 농협은행과의 금고약정에 따른 교육금고지원 협력사업비</p>							구분	2023년 예산액	2024년 예산액	재원별					계	국 고	특 교	도교육청	기 타 *	계	180,000	180,000	180,000	0	0	0	180,000
구분	2023년 예산액	2024년 예산액	재원별																									
			계	국 고	특 교	도교육청	기 타 *																					
계	180,000	180,000	180,000	0	0	0	180,000																					
출 연 필 요 성	○ 창의적인 인재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장학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 필요																											
근거·법령	○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※ 제8조(출연금) 교육감은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 도 감 독 부 서 의 견 (총 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금은 「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(출연금)에 근거하고 있으며, 출연금 재원은 충북교육청과 농협은행과의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로 함 ○ 충북 도내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우수 학생을 조기 발굴하여 성장을 지원하고,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																											
첨 부 자 료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. 출연기관 현황(기관연혁, 인원 및 조직현황 등) 3. 출연사업계획서 																											

1-① 관리·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

- (경영평가) 해당없음
- (재정사업평가 및 감사결과) 해당없음

2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

- 금회 상정 의안인 「2024년도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」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 본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함
-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금은 「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(출연금)에 근거하고 있으며, 재원은 충청북도교육청과 농협은행과의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로 2021년 금고 약정에 따라 4년간 총 719,000천원의 협력사업비가 예정되어 있음

* 향후 4년간 협력사업비 2022년 179,000천원, 2023년 180,000천원
2024년 180,000천원, 2025년 180,000천원

- 충북 도내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우수 학생을 조기 발굴하여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,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의 원활한 장학 사업 운영을 위해 출연 승인을 건의드립니다

3 출연금 검토

(단위:천원)

내역	2023년 예산액(최종) (C)	2024년 예산안			전년대비 증감액 (B-C)
		기관 요구액(A)	실과 검토액(B)	증감 (B-A)	
재단법인 충북교육 성장지원재단 출연	180,000	180,000	180,000	-	-

4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

사업목적 명확성	출연의 당성	유중 복사성	사업방식 효율성	사업의 의성	투자대 비성	재원분 담성
여	여	부	여	여	여	여

1-② 출연 기관현황

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

설립근거	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			전화번호: 043-290-2576 홈페이지: www.cbe.go.kr			
소재지	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	법인등록번호		150122-0002411			
연혁	(설립) 2000. 12. 29.(충북교육장학재단) (설립조례 제정) 2022. 4. 8. (재단명칭 변경) 2022. 6. 17. (출연기관 고시) 2022. 9. 19.			기관형태 (출자, 출연) 출연기관			
인원현황 ('23.10. 현원기준)	계		상근		비상근		
	13명		0명		13명		
임원 ('23.10. 기준)	직책	성명	주요경력		임기		
	이사장	최지현	충청대학교 초빙교수		2023.4.4.~2027.4.3.		
	상임이사	천범산	충청북도교육청 부교육감		재임기간		
	이사	주병호	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장		재임기간		
	이사	오영록	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장		재임기간		
	이사	홍만표	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장		재임기간		
	이사	한명수	충청북도교육청 재정복지과장		재임기간		
	이사	경준용	아하정보시스템 대표		2023.4.4.~2027.4.3.		
	이사	곽영신	I키움어린이집 보육교사		2023.4.4.~2027.4.3.		
	이사	이규호	(주)충북프뢰벨 센터장		2023.4.4.~2027.4.3.		
	이사	정상운	농업 종사		2023.4.4.~2027.4.3.		
	이사	장우천	한국지방교육연구소 선임연구원/팀장		2023.4.4.~2027.4.3.		
	감사	노재경	충청북도교육청 예산과장		재임기간		
	감사	이재명	(주)고운뜰 대표		2023.4.4.~2025.4.3.		
주요업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설립목적: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 육성 ○ 주요사업: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						
자본금(출자기관) 또는 기본재산(출연기관)	2,107백만원 (직전연도말 기준)			교육비특별회계 출자·출연액/지분	2,069백만원 / 98%		
최근 3년간 예산 현황 (단위:백만원)	연도	2021	2022	2023	재무현황 (백만원) '22.12.31.기준	자산	2,346 (자산 총액)
	예산액	379	383	456		부채	0 (부채 총액)
	지자체 지원액	150	179	180		자본	2,346 (자본금 총액)
2022년 경영성과 (단위:백만원)		총수익			총비용		당기순이익
		212			203		9

1-③ 출연 사업계획서

사업명	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	구분	출자	
주관부서	재정복지과		출연	180,000천원

□ 목적 및 필요성

- 충북 도내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우수 인재를 조기 발굴하여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 육성

□ 출연개요

- 사업명: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

- 사업기간 및 출연액 (단위: 천원)

사업명	출연연도	사업기간	출연액	비고
재단법인 충북교육 성장지원재단 출연	2024년	2024. 1. ~ 12.	180,000	

- 주요내용: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사업비*

*사업비: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, 장학금 조성·관리 사업,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, 국제교류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, 저소득층 학생 지원 사업, 충청북도교육감이 위임·위탁하는 사업,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- 출연근거: 「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(출연금)

□ 연도별 지원내역(충청북도교육청 금고 약정사항)

- 최근 4년간(2018년~2021년) 지원 현황 (단위: 천원)

구분	2018	2019	2020	2021	계
운영비*	150,000	150,000	150,000	150,000	600,000

*운영비: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/ 충북교육장학재단지원(운영비)

- 2022년~2025년 약정 현황 (단위: 천원)

구분	2022	2023	2024	2025	계
출연금*	179,000	180,000	180,000	180,000	719,000

*출연금: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/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출연(출연금)

□ 기대효과

- 충북 도내 우수학생 조기발굴 및 성장 지원
- 다양하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충북교육 실현

□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은 2000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총 12억원 이상의 장학금을 도내 학생들에게 지원하여 지속적인 장학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, 출연기관 고시와 정관 변경을 통한 재단 운영 활성화를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우수 학생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음
- 재단의 주요 수입인 출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재단 목적사업 수행의 어려움과 장학사업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됨

관련법령 발취

□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20조(재정 지원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- 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3조(사업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
2. 장학금 조성·관리 사업
3.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
4. 국제교류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
5. 저소득층학생 지원 사업
6. 충청북도교육감이 위임·위탁하는 사업
7.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8조(출연금) 교육감은 재단의 목적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.